

수신 조합원 및 농업기계화사업 참여업체 대표
(경유)

제 목 2023년 농업기계 생산시설·설비자금 지원신청안내

1.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[2023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]과 관련됩니다.
2. 우리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적기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「제조공장 신·증축 및 생산설비 지원자금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코자 하니,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업체 중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'23. 1. 27(금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자금지원업체로 선정된 후 취소할 경우에는 정부예산 불용발생 및 실 수요업체의 자금사용 불가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, 취소업체는 차기년도 자금지원 선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꼭 이점 유념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2023 농기계 생산시설·설비지원 자금 지원대상자

- 1)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
- 2)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각각 3억원 이상인 업체
- 3) 붙임3(농기계 생산시설·설비자금 배정기준)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

나. 지원한도액: 아래항목 중 최저금액

- 1) 건축 - 20억원 이내, 생산설비 - 10억원 이내
- 2) 자금 활용계획서의 90% 이내

다. 지원형태: 3년 거치 10년 상환

라. 대출금리: 연리 2.0%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(23년 1월 현재 2.07%내외)

마. 사용용도: 제조공장 건축(신축·증축·개축) 및 생산설비 지원

* 공장 및 토지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바. 제출서류: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

- 1) (붙임 1) 농기계 생산시설·설비자금 배정 신청서
- 2)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기부등본(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)
- 3)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('20년 ~ '21년)
- 4) 수출신고서(Local 포함)사본: *해당되는 경우

5) 기술권리증(10년 이내 발급된 특허, 디자인 등)사본 : *해당되는 경우

6) 건축물(공장): 설계도면 및 견적서(또는 계약서)

기계설비: 카달로그 및 견적서

7) (붙임 2) 농기계 생산시설·설비자금 활용 계획서

사. 수수료: 대출금액의 0.33%(부가가치세 포함)

아. 대출기관: NH농협은행(지역농협 제외)

※생산시설·설비자금 신청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NH농협은행과 대출 가능 금액(담보 제공능력 등)을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: 1. 농기계 생산시설·설비자금 배정 신청서 1부.
2. 농기계 생산시설·설비자금 활용 계획서 1부.
3. 농기계 생산시설·설비자금 배정기준 1부. 끝.

※붙임서류 다운로드(www.kamico.or.kr→농기계정책지원→자금지원)

※온라인 신청(<http://k2.kamico.or.kr>→정책지원포털→회원가입→로그인 후 신청)

* 첨부파일의 용량이 50MB 초과할 경우 이메일(k2@kamico.or.kr) 제출

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신길



대리(기안자) 전무이사 2023.1.10

김대운 이기중

협조자 안상화, 김형민, 조세영

시행 정책지원팀-19(2022. 1. 10.)

우 3104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180

/ www.kamico.or.kr

전화번호 041-411-2122~4 팩스번호 041-555-4491

Email k2@kamico.or.kr